

대전지방법원 2015. 5. 14 선고 2014가단12536 판결 [토지인도및건물철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3. 26.

판결 선고 2015. 5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대 813㎡ 중, 별지 1 도면 표시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4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시멘트블록, 벽돌조 스레트, 양철지붕 단층주택 65㎡, 같은 도면 1, 2, 3,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L)부분 조립식판넬조 단층주택 1㎡를 각 철거하고,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134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, 3, 5, 6, 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대전 동구 C 대지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4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65㎡에 시멘트블록, 벽돌조 스투트, 양철지붕 단층주택을, 같은 도면 1, 2, 3, ①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1㎡에 조립식판넬조 단층주택을 각 건축하였고, 별지 2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①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134㎡를 점유·사용하고 있다.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별지 1 도면 (ㄱ)부분 65㎡와 (나)부분 1㎡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, 피고가 점유·사용 중인 별지 2 도면 'ㄴ'부분 134㎡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1989. 6.경 자신의 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이가 좋아 피고가 위 부동산에 건물을 짓고 사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인 사용대차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1989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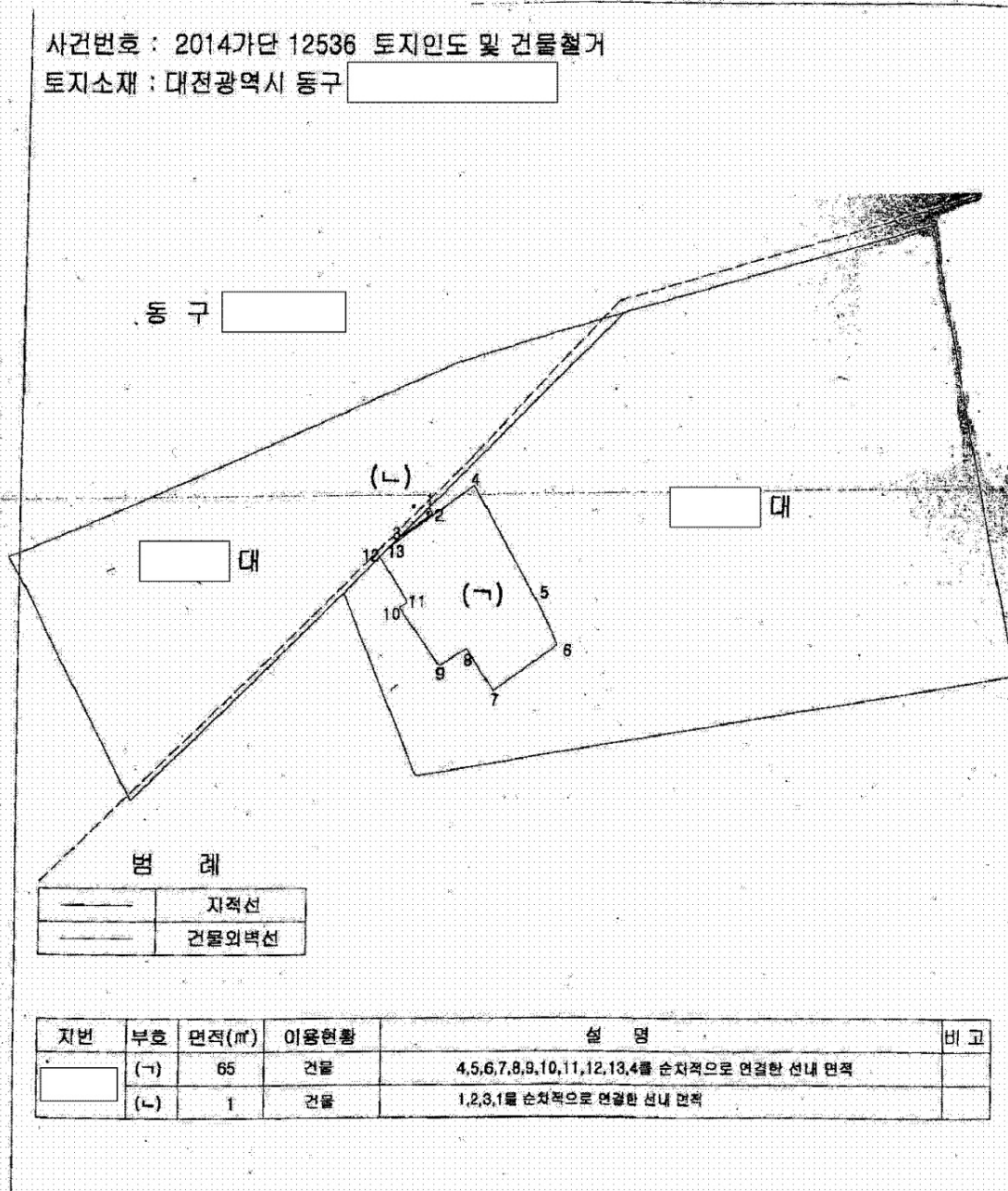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현순

<도면 1>

사건번호 : 2014가단 12536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

토지소재 : 대전광역시 동구



<도면 2>

